안전교육 운영 규정

(607)

안전교육 운영 규정

목　　차

제1장 총　칙

제1조(목　적)

제2조(교육의 범위)

제3조(교육과정)

제4조(교육대상)

제5조(교육과목 및 시간)

제6조(강　사)

제7조(교육시기 및 공고)

제8조(교육절차)

제9조(교육수수료)

부　칙

안전교육 운영 규정

1992. 5.20 제 정
1999. 1. 1 개 정
2001. 1.19 개 정
2004.11.18 개 정
2006. 2.27 개 정
2007.12. 3 개 정
2011. 1. 1 개 정
2015. 1. 1 개 정
2016. 8. 1 개 정
2020. 4.28 개 정
2025. 8.29 전부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총포화약법”이라 한다)」 제22조에 따른 총포·석궁, 화약류, 수렵 전 안전교육 및 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사격장안전법”이라 한다) 시행령」 제9조제3호에 따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의 범위) ① 총포화약법 제22조제3항 및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라 경찰청에서 위탁받은 교육을 시행한다.

② 총포화약법 제52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교육과정) ① 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포·석궁 안전교육 과정
2. 화약류 안전교육 과정
3. 수렵 전 안전교육 과정
4.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과정

②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교육대상) 교육과정 별 대상은 총포화약법 제22조 및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9조와 같다.

제5조(교육과목 및 시간)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: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(별표9)

2. 제3조제1항제4호 : 별표1

제6조(강사)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교육과정 강사는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(별표10)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.

② 제3조제1항제4호 교육과정 강사는 전항의 기준에 준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교육시기 및 공고) 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에 보고 후 시행한다. 다만, 총포화약법 제28조에 따른 면허발급 및 사격장안전법 제11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

②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의 일시, 장소 그 밖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육절차) ① 제3조제1항의 교육과정 신청은 교육 시작일 이전까지 접수 받아야 한다.

② 전항에 따른 신청, 접수가 완료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한다.

③ 제3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교육과정 별로 별지 제5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발급한다.

제9조(교육수수료) 교육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포·석궁, 화약류, 수렵 전 안전교육 :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표 18(검사·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)에서 정한 상한액

2.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: 5만원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)

①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8. 1)

①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4. 28)

① 이 규정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8. 29)

①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시 「권총실내사격장 관리자 교육규정」을 폐지한다.

(별표1)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과목 및 시간(제5조 관련)

교 육 내 용	교육시간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1시간 30분
총기 및 무기고 관리	
총기 및 권총실내사격장 사건·사고사례	
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의무	
사격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	

(별지 1호 서식)

[✓] 엽총·공기총·석궁 소지허가
[ ] 화약류 제조보안(관리보안) 책임자 교육 수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 :)	
	직 업	
신청 내용	교육지망연월일	
	교육지망장소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및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준비물	신분증	수수료 20,000원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별지 2호 서식)

[ ] 엽총·공기총·석궁 소지허가
[✓] 화약류 제조보안(관리보안) 책임자 교육 수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 :)	
	직 업	
신청 내용	교육지망연월일	
	교육지망장소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및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준비물	화약류제조기사·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·화약류관리기사·화약류관리산업기사·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	수수료 20,000원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별지 제3호 서식)

수렵 전 안전교육 수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 :)	
	직 업	
신청 내용	교육지망연월일	
	교육지망장소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및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준비물	신분증	수수료 20,000원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별지 제4호 서식)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수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 :)	
	직 업	
신청 내용	교육지망연월일	
	교육지망장소	

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준비물	신분증	수수료 50,000원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별지 제5호 서식)

제 호

총포·석궁 안전교육 수료증서

1. 성 명 : (생년월일: . . .)

2. 주 소 :

3. 수강년월일 : . . .

4. 수 강 장 소 :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
5. 수 강 내 용 : 1.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2. 야생 동·식물 보호법령
3. 엽총·공기총·석궁 등의 취급실기 등

위 사람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

210㎜×297㎜

(별지 제6호 서식)

제 호

화약류 안전교육 수료증서

1. 성 명 : (생년월일: . . .)

2. 주 소 :

3. 수강년월일 : . . .

4. 수 강 장 소 :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
5. 수 강 내 용 : 1.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2. 화약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 등

위 사람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

210㎜×297㎜

(별지 제7호 서식)

제 호

수렵 전 안전교육 수료증서

1. 성 명 : (생년월일: . . .)

2. 주 소 :

3. 수강년월일 : . . .

4. 수 강 장 소 :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
5. 수 강 내 용 : 1. 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
2. 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·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
3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주의사항 등

위 사람은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

(별지 8호 서식)

제 호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 수료증서

1. 성 명 : (생년월일: . . .)

2. 주 소 :

3. 수강년월일 : . . .

4. 수 강 장 소 :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
5. 수 강 내 용 : 1.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2. 사격장 소방·방화시설 유지·관리 및 사용방법
3. 사격장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

위 사람은 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